

국 민 안 전 처

시정요구·통보

제 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해운대구

내 용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초고층 재난관리법”)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(이하 “복합건축물⁵⁶⁾”)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·군·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·군·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·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보고를 받은 시·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.

부산광역시에서는 【표 1】과 같이 61개의 복합건축물을 관리 중이며, 이 중에서 해운대구에 위치한 ○○○○○○○○○빌딩과 ○○○○○○○○ 등 2개 복합건축물관리주체는 【표 2】와 같이 「초고층재난관리법」에서 규정되어 있는

56) 「초고층재난관리법」 제2조

제1호 초고층 건축물”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(「건축법」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)

제2호 “지하연계 복합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

가.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

나.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

제5호 “관리주체”란 초고층 건축물 등 또는 일반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함

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해당 복합건축물은 동 계획에 따른 화재 등의 재난예방에 취약하고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다.

【표 1】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

구분	계	중구	동구	진구	동래	남구	북구	해운대	연제	수영	사상
계	61	2	5	6	1	5	3	34	2	2	1
초고층	28			1	1	1		25			
지하연계	33	2	5	5		4	3	9	2	2	1

※ 자료 : 부산광역시 ○○○○과 제출자료 재구성

【표 2】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부적정 관리 현황

구명	건물명	위반내용		비고
		근거	내용	
해운대	○○○○○○○○빌딩 (해운대구 ○○○대로 50)	같은 법 제10조 위반	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미제출	과태료 부과 대상
	○○○○○○○○ (해운대구 ○○대로 814)	같은 법 제10조 위반	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미제출	과태료 부과 대상

※ 자료 : 부산광역시 ○○○○과 제출자료 재구성

그러나 해운대구청에서는 해당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을 세우도록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, 과태료 총 10백만원을 미부과 하는 등 「초고층재난관리법」에 따른 복합건축물 관리를 부적정하게 이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해운대구청장은

[시정] 「초고층재난관리법」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각각 5,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.

[통보] 해당 복합건축물 관리주체가 조기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